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투자공사의 국내투자 허용 등〉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6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한국투자공사의 국내투자 허용(안 제31조제5항)	3
2. 폐지된 구법 인용조문 삭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안 제38조제1항)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년의원 등 2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

다. 회 부 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현행법은 이러한 자산운용 기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지난 2007년 4월에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조항이 남아 있어 법체계와 조문 구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투자를 할 수 있음.

한편 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법률과 독립기관 형태로 투자기관을 설립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운용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현행 조문을 정리하고 공사가 일부 위탁자산을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등).

Ⅲ. 검토의견

1. 한국투자공사의 국내투자 허용(안 제31조제5항)

현행	개정안
○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제31조) -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 가능	○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제31조) -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 가능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부를 증대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에 설립된 기관¹⁾으로, 2025년 10월 기준 총 운용자산 규모는 2,296억 달러이며 누적 수익은 1,170억 달러를 시현함.

[연도별 운용수익 현황(단위: 억 달러,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0월
총자산가치	1,108	1,341	1,316	1,573	1,831	2,050	1,693	1,894	2,065	2,296
누적 수익	158	341	290	492	710	879	582	778	939	1,170
총자산 수익률	4.35	16.42	-3.66	15.39	13.71	9.13	-14.36	11.59	8.49	12.7

자료: 한국투자공사

1)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투자공사는 주로 외국환평형기금 및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투자공사법」은 공사가 위탁받은 자산은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²⁾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외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국부를 증진하고 있음.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은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내 첨단전략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 대상 확대를 통하여 자산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한국투자공사의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경우 외화 자산을 원화로 환전함에 따라 환율 변동성을 자극하고 외환보유고 유동성을 훼손할 수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및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기관이므로 해외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

2)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④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에 따른 수익 창출과 함께 외환 유동성과 안정성이 요구됨.

한국투자공사의 원화 자산은 국가 경제 위기가 발생³⁾하는 경우 외환시장 안정화 자금으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국내 투자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둘째, 정부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한국산업은행이 해당 펀드를 전담하여 운영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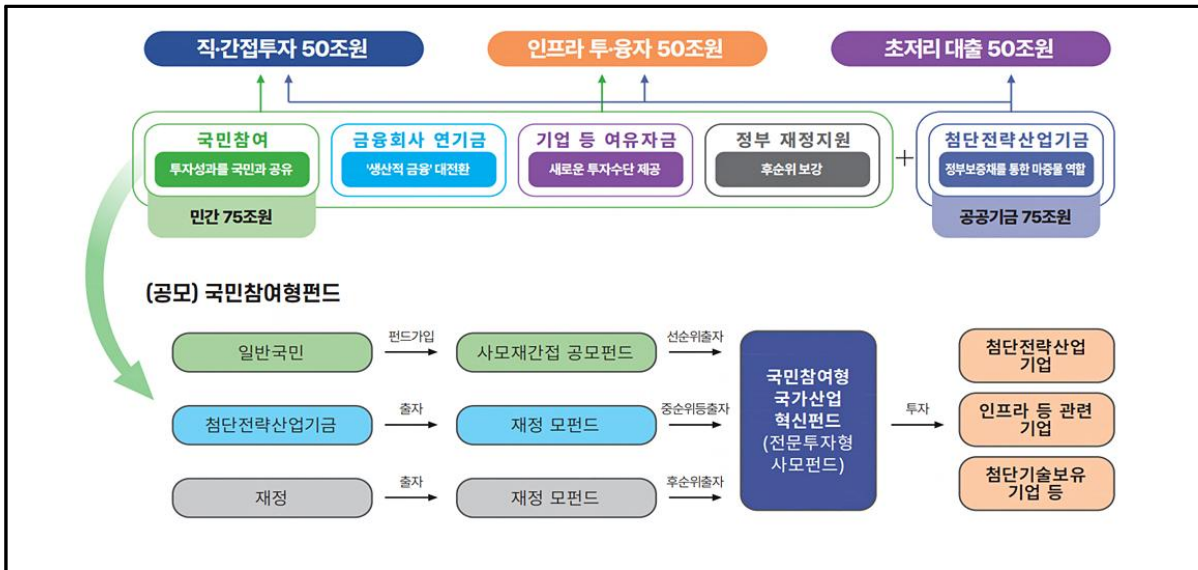
국민성장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인 ① 반도체, ② 디스플레이, ③ 이차전지, ④ 바이오, ⑤ 로봇, ⑥ 방산, ⑦ 백신, ⑧ 수소, ⑨ 미래형 이동수단, ⑩ 인공지능 산업 영위 기업 및 해당 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한국투자공사의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경우 정부가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영역이 중복되어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투자공사와 국민성장펀드 간 역할 구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IMF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외화 자산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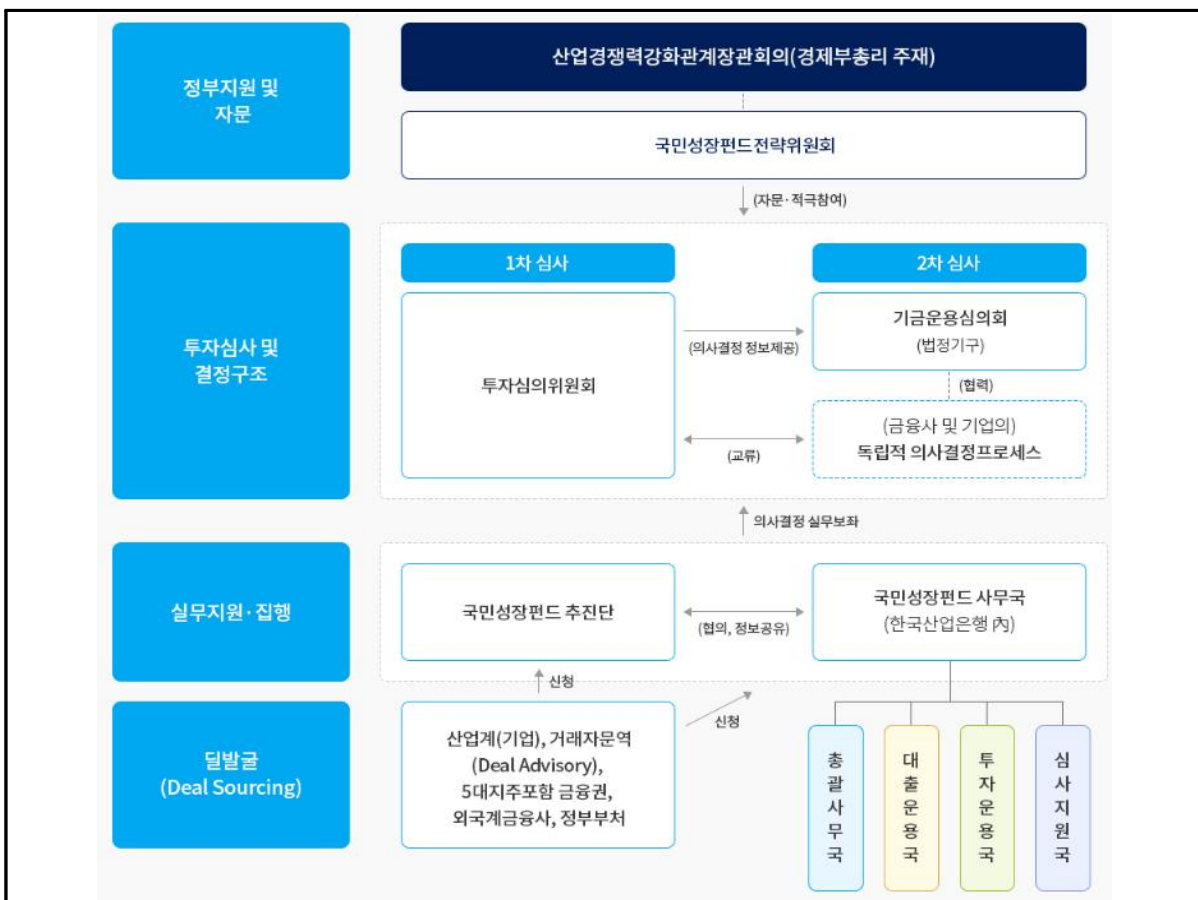
4) 재정경제부는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한국투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으로 국내투자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투자 규모에 해당하는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민성장펀드 운영방안]



자료: 한국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 운영구조]



자료: 한국산업은행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 ④ (생략)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⑤ ----- ----- <u>경우 또는 위탁받은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을</u> -----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2. 폐지된 구법 인용조문 삭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 다른 법률과의 관계(§38) - 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다만, 재경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해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음(제1항) - (생략) (제2항~제5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38) -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다만, 재경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해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음(제1항) - (현행과 같음) (제2항~제5항)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제정되면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현행법 제38조에서 폐지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운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한국투자공사가 「공운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운법」이 2007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4월부터 시행되면서 같은 법 부칙⁵⁾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 「공운법」 제정 당시 부칙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도 개정해야 하였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이에 폐지된 구법을

5) 「공운법」

부칙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인용한 현행법상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폐지된 구법 인용조문을 삭제하면서 한국투자공사가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공운법」의 제정 취지를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체계상 한국투자공사가 「공운법」을 적용받지 않고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운법」 제4조제2항6)의 개정도 필요함. 이는 2007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운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한국투자공사가 「공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⁷⁾·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6) 「공운법」

제4조(공공기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7) 「공운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⑥ (생략)

「공운법 시행령」

참고로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하여도 동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율하고 있었으나,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한 여타의 기관은 「공운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 적용 범위에 포함 된 바 있음8).

「공운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9)하는 법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가. 공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
 - 나. 법무·준사법 업무, 합의·조정 업무나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 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해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
 - 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8)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운법」

제4조(공공기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 2. (생략)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9) 「공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률로 법 제2조(적용 대상 등)에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운법」에서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⁰⁾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공운법」의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¹¹⁾

참고로 제18대, 제19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본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¹²⁾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공운법」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1)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존재 실익이 없는 폐지법률 인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의하나, 개정안대로 규정될 경우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의 법적 지위 및 관리체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 제38조제1항 본문이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한국투자공사는 공사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운용성과를 제고하고자 한 동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운법」 제4조제2항에 새로운 호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 법 제38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공운법」”으로 개정하는 내용 : 이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06934호), 류성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3143호), 정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2350호)

- 법 제38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 : 류성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8953호)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48